

충청북도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3. 12. 1.

기획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 년 11 월 17 일

○ 회부일자 : 1993 년 11 월 17 일

다. 상정일자

○ 제 5 차 기획경제위원회('93. 12. 1.)상정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이 종 배)

가. 제안이유

지방단위 각종위원회중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전산화추진위원회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금까지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는 지역전산본부설치 운영조례 11조에 “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산화추진위원회 기능을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토록 등 조례를 개정(안 제11조 제1항)
- 전문가 및 교수등 3인이내 위촉인원은 종전과 같이 존치(안 제11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안 창 국)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전산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산업무의 개발계획, 전산기기 설치계획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개발등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조정 하였으나

충청북도의 주요 도정을 심의 조정하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는바,

본 조례의 기능을 이와 통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가 및 교수등을 위촉하여 추진코져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문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대로 가결 (참석 8, 찬성 8)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